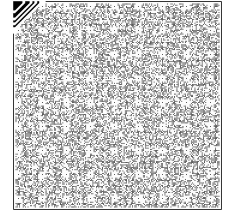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22-6호) 안내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하고, 일부개정고시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2022.1.12.))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붙임.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초의료보장과장, 약무정책과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다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조달청장,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대한간호협회장, 한국병원약사협회장,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주영화 ★행정사무관 전하늬 보험약제과장 양윤석 전결 2022.1.12.

협조자

시행 보험약제과-159 (2022. 1. 12.)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56 팩스번호 044-202-3959 / zerofl@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